



식품 표시기한 개선, 소비자 알권리 보장

Date Marking of food and Consumer's right

최근 가공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여론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일이 있다. 현행 '유통기한' 보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정부안의 골자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식품표시기한 개선안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탓에 일부 소비자단체로부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뒤로 하고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현행 '유통기한(sell by date)'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써, 기한 경과 후 '판매'가 금지된다. 이 유통기한은 부패가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일정 안전기간 만큼 앞당겨 식품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식품의 '안전' 기한이 아니므로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섭취는 일정기간 이후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다. 반면 '소비기한(use by date)'은 해당 식품을 소비하여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최종시한으로써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섭취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식품의 위해성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유통기한' 보다는 '소비기한'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관점에서 판매행위에 초점을 맞춰 그 행위를 관리·단속하기에 용이한 '유통기한' 제도를 선택했다. 정부는 식품 안전을 보다 두텁게 확보하고, 기업은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도입 후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유통기한'이 오늘날 우리의 식품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김기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과장

없을 것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식품 안전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구매를 기피하고, 경과제품을 폐기한다. 식품의 부패·변질이 시작되는 시점은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불필요한 식품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유통기한=안전기한'이 아니라고 그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그 어디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소비기한'을 식품의 외관만으로 스스로 예측하여 식품 섭취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식품을 언제까지 섭취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다만, 많은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기한을 폐지하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것은 자칫 명칭 변경에 지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중요한 것은 유통기한은 단지 '판매'가 금지되는 것에 불과하며, '섭취'를 결정하는 것은 소비기한이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인지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기하여 업체에게는 판매 허용기한을, 소비자에게는 섭취 허용기한을 동시에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식품 표시기한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을 당시 많은 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다. 혹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식품업체의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 가능하다. 우선 적절한 보관온도 및 방법이 지켜진다면 소비기한 내에 있는 식품은 안전하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유통기한 내에 있는 식품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표시기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저온유통시스템(cold chain system) 정착을 위해 정부와 기업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도 적절한 식품 보관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과연 이번 표시기한 제도 개선이 기업에게 무조건 유리한 정책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유통기한은 그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업체는 현재 자사제품의 안전을 유통기한까지만 담보하면 되던 것을 제도가 개선되면 소비기한까지 책임져야 하는 과제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예전에 비하여 자사 제품의 유통 안전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이번 식품 표시기한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 선택을 돕고, 안전 기한까지 식품을 효율적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식품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은 식품 폐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결과도 식품 안전과 국민 건강이 확보되어야만 의미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식품 제조·유통 상의 철저한 안전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ㄱ